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10.30. 시행 2019.10.31. 개정 2020. 4.22. 시행 2020. 4.22. 개정 2020. 8.26. 시행 2020. 8.28. 개정 2022.11.10. 시행 2022.11.10. 개정 2023. 9.21. 시행 2023. 9.26. 개정 2024.12.10. 시행 2024.12.1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사의 임직원 및 공사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4.22.><개정 2020.8.26.><개정 2022.11.10.>
 - 1. "사업장"이란 본사(프레스센터), 한국광고문화회관, 한국방송회관, kobaco 연수원, 지사 등을 말한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한다.

- 3. <삭제 2022.11.10.>
- 3의2. "안전보건관리자"란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3의3.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본사, 한국광고문화회관, 한국방송 회관, KOBACO연수원, 각 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각 본 부장 및 지사장을 말한다.
- 4. "관리감독자"란 각 부서의 안전관리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 회·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사업장안전보건담당자"란 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부서의 안전보건업 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7. <삭제 2022.11.10.>
- 8. <삭제 2022.11.10.>
-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9의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9의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9의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10. <삭제 2022.11.10.>
- 1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12. "중대사고"라 함은 공사 사업장 및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2호에 따른 중대재해
 - 나.「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중대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 ②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 지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개정 2024.12.10.>

[본조 제목 개정 2022.11.10.]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공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사업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공사 사업

- 장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1.10.><개정 2024.12.10.>
-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공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신설 2022.11.10.>
- 제4조(재해예방 의무)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 3. <삭제 2022.11.10.>
 - 4.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5. <삭제 2022.11.10.>
 - ②[별표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 본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 다. <신설 2022.11.10.><개정 2024.12.10>
 - ③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각 부서에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신설 2022.11.10.>

- 제5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 ①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도급사업에 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었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공사가 제공·지정한 장소
 - 2. 공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 ②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삭제 2022.11.10.>
 - 2. <삭제 2022.11.10.>
 - 3. <삭제 2022.11.10.>
 - 4. <삭제 2022.11.10.>
 - 5. <삭제 2022.11.10.>
 - ②기타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책임 범위 등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고용노동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11.10.>

[본조 제목개정 2022.11.10.]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개정 2020.4.22.>

-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별로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②안전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등을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공사의 재난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조언,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개정 2022.11.10.>
 - ③공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1.>
 - 1. 공사 총괄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공사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사항
- 10.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등
-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삭제 2022.11.10.>
- 2. <삭제 2022.11.10.>
- 3. <삭제 2022.11.10.>
- 4. <삭제 2022.11.10.>
- 5. <삭제 2022.11.10.>
- 6. <삭제 2022.11.10.>
- 7. <삭제 2022.11.10.>
- 8. <삭제 2022.11.10.>
-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본조 제목 변경 2022.11.10.]

제7조의2(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 호의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1. 소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소관 사업장의 작업의 중지
- 3. 소관 사업장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소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6.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관 사업장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등

[본조 신설 2022.11.10.]

- 제8조(안전보건관리자) 공사 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감 독자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전 사업장 내 안전보건부문관리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 근무환경의 업무시설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
 - 2.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상황 관리
 - 3.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총괄

- 4. 전 사업장 안전표지 부착, 안전보건수칙 게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여부 확인 감독
- 5. 전사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전 사업장별 시행 확인
-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2.11.10.]

제8조의2(관리감독자) 소관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관 사업장 내 관련 기계·기구 또는 설비, 근무환경의 업무시설 안 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관리
- 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 치 상황관리
- 3. 해당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4. 소관 사업장 안전표지 부착, 안전보건수칙 게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확인
- 5.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0.4.22.][본조 제목 개정 2022.11.10.]
-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근로자 등에게 지도조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②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4.22.>
- 1.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협의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련 업무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수립 등 소관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
- 3.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4.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및 결과 조치의 건의
- 5. 사업장 내 보유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 근무환경의 업무시설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보고·조치
- 6. 사업장 내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파악·보고 및 응급조치
- 7. 사업장 안전표지 부착. 안전수칙 게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8.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안전보건담당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준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 제10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①공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개정 2024.12.10.>

- ②<삭제 2022.11.10.>
- ③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10조의2<삭제 2022.11.10.>

- 제10조의3(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장은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 ②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10조의4(안전근로협의체) ① 공사는 도급사업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현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의 근로자, 도급사업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필요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제10조의3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하는 대상 사업장은 안전근로협의체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한다.
 - ③안전근로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 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3장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개정 2020.4.22.>

제1절 기본계획 수립<절 신설 2022.11.10.>

- 제11조(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계획
 - 3. 안전보건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 ③공사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개정 2024.12.10> ④<삭제 2022.11.10.>

[본조 제목 개정 2022.11.10.]

제11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

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12조(안전보건교육)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대상자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충족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1. 정기 안전보건교육
 -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3. 특별 안전보건교육
 - 4.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 ②<삭제 2022.11.10.>
- 제1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질담당자(자격선임)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 등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10.>
 - ③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위험 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물질 보관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제13조의2(안전조치) ①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4. 기타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본조의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13조의3(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사업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포함한 작업지침을 작성·배포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 ②안전보건담당자는 근로자가 작업장 등에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안전보건담당자는 각 호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지게차등)
- 2.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작업
- 3. 가연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가스절단 등의 화기작업
- 4. 기계실 등 환기시설이 부족한 장소의 밀폐공간 작업
- 5. 고소작업(이동식 사다리)
- 6. 야간이나 조명의 제약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 7. 핸드 그라인더 취급작업
- 8. 비정상작업(수리 및 정비작업 등)
- 9. 기타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업 ④해당 사업장 및 작업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표준작업안전수칙 등의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13조의4(안전검사)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23.9.21.]

- 제14조(작업중지) ①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③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10.>
 - ④관리감독자는 폭염·한파·풍랑과 관련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현장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 제15조(안전표지 작성 및 게시) ①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재해 방지와 안 전확보를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한 시설·장비, 기계기구 및 장소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 의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개정 2022.11.10.>
-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등에 따른다. <신설 2022.11.10.>
- 제16조(안전점검 및 진단) ①근로자 안전 및 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관리감 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②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시설현황에 맞게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존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위험물, 수질관리, 전염병 등에 관한 사항
 - 2.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3.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4.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5. 그 밖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③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불안전 요인이 내포된 시설은 현장즉시 조치하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11.10.>
 - ④공사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 진단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 할 수 있다.

- ⑤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진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 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기관 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유해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경영진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2022.11.10.>

제2절 도급사업 안전관리<절 신설 2022.11.10.>

제16조의2(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16조의3(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근로 자가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3. 수급인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지원
- 4.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5.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본조 신설 2022.11.10.]

제16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 두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료를 확인·갱신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감독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2. 유해·위험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본조 신설 2022.11.10.]

제16조의5(도급인의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16조의6(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발주하여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1.]

제16조의7(작업지휘자의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1.]

제17조<삭제 2022.11.10.>

제18조(비상조치계획 및 훈련) ①공사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사업장별로 작성, 운영 해야 한다. ②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③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한 피난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현장에 맞게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
- 제19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입주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3절 사업장 보건관리<절 신설 2022.11.10.>

- 제20조(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관리) ①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환기· 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사업장은 항상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②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공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공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한다.

제20조의2(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보건관리자는 직원의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매년 건강진단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본조 신설 2020.4.22.]

- 제20조의3(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공사는 근로자 중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금지했던 근로자가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20조의4(작업환경측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 지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9.21.]

- 제20조의5(보호구)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적격품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하 지 않게 한다.
 - ④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⑤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보호구 착용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1.]

제20조의6(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 응대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고객응대직원은 안전보건관리채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응대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3.9.21.]

- 제21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근골격계 부담 근로 및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 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근로자는 공사가 시행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또는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③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 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복귀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전환 하 도록 한다.

- ④근무특성상 근무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무자세 및 근로환경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사고발생 대책 수립

- 제2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사고 발생시 사고 확산방지 및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②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해당 사업장안전보건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③사업장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유·무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별표3]의 절차에 따라 [별표4]의 보 고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로 안전보 건관리 전담부서로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④연쇄 재해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⑤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10.>
- 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⑦ 공사는 중대사고 대책본부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신설 2022.11.10.>
- ⑨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행동강령 및 중대사고 대책본부 운영방안 등은 사장이 정하는 공사「중대(산업·시민) 재해대비·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신설 2022.11.10.>
- 제2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11.10.>
 -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추진일 정 등을 포함하여 대책 수립한다. <개정 2022.11.10.>
 - ③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

- 을 공지한다.
- ④ 사고 처리 시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 1. 노동부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 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

제5장 위험성평가

- 제24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 ②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현장의 경우 사장이 정하는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④공사의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는 사장이 정하는「위험성평가 실시 기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⑤<삭제 2022.11.10.>

제25조 <삭제 2022.11.10.>

- 제2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 정보
 -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제6장 임원의 문책<신설 2020.8.26>

제27조(적용범위) 본 장은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8.26]

[종전의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8.26>]

제28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공사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

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26]

[종전의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8.26>]

제29조(문책 사유)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28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수 있다. <개정 2022.11.10.>

- 1.「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본조신설 2020.8.26]

제30조(문책 종류) 문책은 해임·연임제한·업무배제·기본연봉 감액·경 고·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임
- 2. 연임제한

- 3. 업무배제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업무배제 처분을 받은 자는 출근이 정지되고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기본연봉 월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4. 기본연봉 감액: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 다.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 5. 경고 :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주의 2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 6. 주의: 특별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한다.

[본조신설 2020.8.26.]

- 제31조(문책 절차) ① 사장은 임원 문책시 지체 없이 특별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 ②임원 문책 심의를 위한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사장 유고시 차하위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문책절차, 문책양정, 문책감경, 문책가중, 문책대상자의 진술권, 증인의 신청, 피해자의 진술권, 문책 사유의 시효 및 특별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중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8.26.]

제7장 보 칙<제6장에서 이동 2020.8.26>

- 제32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22.><개정 2022.11.10.>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제27조에서 이동 <2020.8.26.>]

제32조의2(안전보건 전문성강화) 사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 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보건 전담인력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인사조치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 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32조의3(안전문화확산) ①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 근로자가 다 같이 참여하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②공사는 대국민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32조의4(안전예산투자) 공사는 근로자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무재해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안전예산 투자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노후, 위험시설 개량 및 보수
 - 2. 안전보호구 개선 및 보급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유지
 - 4.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양성
 - 5. 기타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2.11.10.]

제33조(준수) ①모든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 ②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정할수 있다.<개정 2020.4.22.><개정 2024.12.10>
- ③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소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선임자는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경 영시스템 내 절차서·지침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제28조에서 이동 <2020.8.26.>]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4.22.>

이 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8.26.>

이 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11.10.>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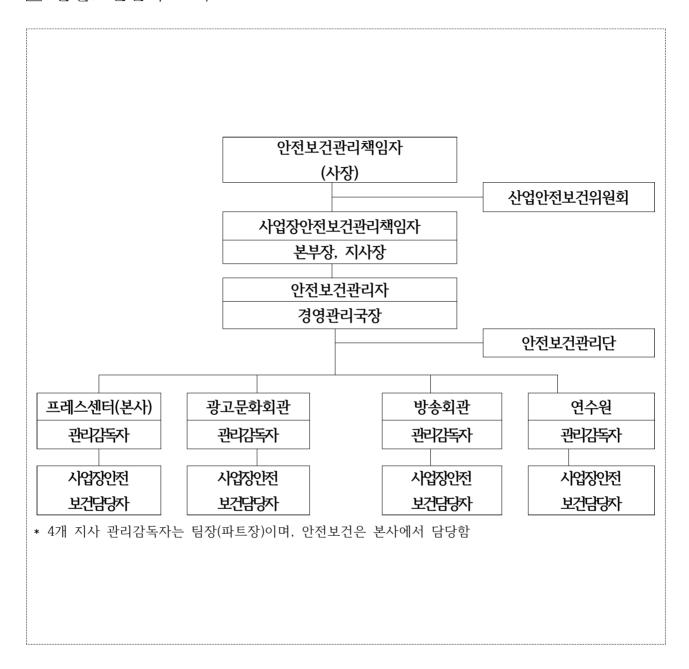
이 규정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12.10.>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4.22.><개정 2022.11.10.><개정 2024.12.10.>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사고 보고서 (중간 보고용)

	사업장명											
기초 정보	회사명				발생일 시		20	년		월	(일
	사고장소				사고형 태							
	성명			생년월 일			성별		[]남	[]여
	국적	[] 내국인	[]외국인[국적	학 체류	지격]	직종					
사고 경위	일시(언제)					·						
	장소(어디서)											
	누가(재해자)											
	내용(무엇을)											
	경위(어떻게)											
	이유(왜)											
조치												
계획												
기타	w 참장기미	Ale u c	٥٥ الم	ᅱᆫᅱ	در							
작성 자	※ 향후전망,직위 :	선돈모노 성명:	亦두, ≒이사	· 양 등 작 관리? 자	}독 직위	十:	,	성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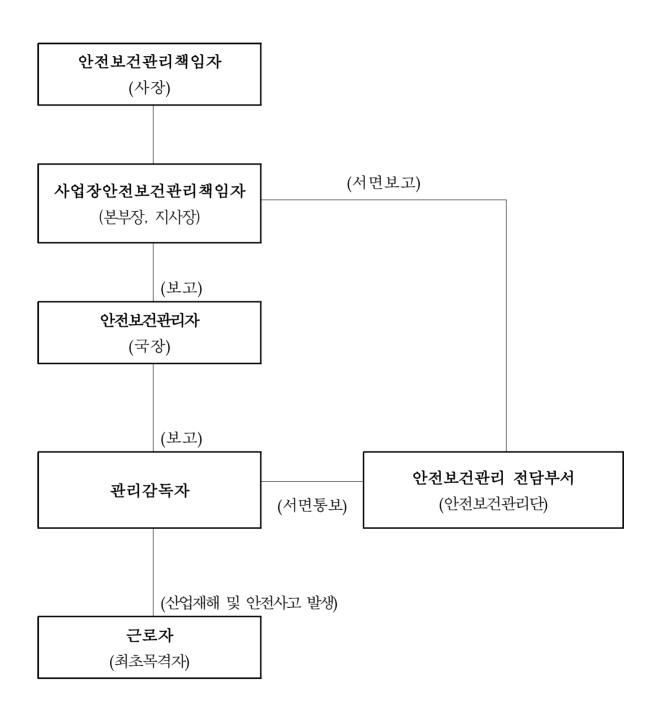
[별표 2]<신설 2020.8.26.>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_도급인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직 영 및 도급	산업안전 보건법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⑫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⑪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_도급인 ④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_도급인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산업안전 보건법	①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②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연임제한 업무배제	
발주	건설기술 진흥법	- ' (3) 아저파리 제외 스이규저 의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전기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공사업법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사업법	(6)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8)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력기술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관리법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연임제한
소방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 경고
문화재 수리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주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

[별표 3]<신설 2022.11.10.>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보고절차



[별표 4]<신설 2022.11.10.>

□ 안전사고 SNS 보고 (초기 보고용)

[사고발생 문자보고]

- 1. 현장명:
- 2. 사업부서:
- 3. 사고일시:
- 4. 재해자 인적사항:
- 5. 사고경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6. 상해정도:
- 7. 향후계획: